

#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주광덕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013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6.

발의자 : 주광덕 · 강석진 · 나경원

윤상직 · 황영철 · 박덕흠

이학재 · 이진복 · 정종섭

김정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.

특히,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이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.

이에 일본식 표현인 ‘관하여 필요한’ 및 ‘계리’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‘필요한’ 및 ‘회계처리’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4제2항 등).

##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3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4제2항 중 “계리한다”를 “회계처리한다”로 한다.

제20조의5제2항, 제20조의6제2항,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2항  
후단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각각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20조의2(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) ① · ② (생 략)<br>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, 정관 기재사항, 운영 및 감독 등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br>④ · ⑤ (생 략)      | 제20조의2(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<br>-----<br>-----필요한-----<br>-----.<br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|
| 제20조의4(기본재산의 조성) ① (생 략)<br>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<u>계리한다</u> .   | 제20조의4(기본재산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회계처리한다.  |
| 제20조의5(공제규정) ① (생 략)<br>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 사업의 종류·대상·부금·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<br>③ (생 략) | 제20조의5(공제규정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<br>-----필요한-----<br>-----.<br>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|
| 제20조의6(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) ① (생 략)<br>② 준비금의 적립·운용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  | 제20조의6(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필요한-----   |

|  |   |
|--|---|
| 로 정한다.   | -.  |
| 제21조(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) ① · ② (생략)   | 제21조(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|
|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| ③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1. ~ 3. (생략)<br>4.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| 4. -----<br><u>필요한</u> -----<br>-----<br>--<br>④ ~ ⑦ (현행과 같음)   |
| 제22조(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) ① (생략)<br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(이하 “콘텐츠제 | 제22조(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     |

|   |  |
|---|--|
| <p>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”이라<br/>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콘텐<br/>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<br/>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<u>관하</u><br/><u>여 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<br/>로 정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| -----<br>-----.<br>-----<br>-----<br>-----필요한---<br>-----. |
|  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 |